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(윤종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72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7.

발 의 자 : 윤종균 · 전용기 · 남인순
이기현 · 김병주 · 김태선
김태년 · 김우영 · 신정훈
서미화 · 최혁진 · 이광희
문진석 · 허 영 · 안태준
소병훈 · 복기왕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과 신속한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,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인·허가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의2 신설 등).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법률 제2104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
제27조제5항 중 “신청·방법”을 “방법”으로, “「주택법」 제18조제3항”
을 “「주택법」 제18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0조의2(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의 구축) ① 국토교통부장관
또는 시·도지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
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
업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
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시·도지사는 정당한
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은 「도시 및 주거환
경정비법」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
여 활용할 수 있으며,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
는 시·도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104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 제27조(통합심의) ① ~ ④ (생략) ⑤ 통합심의의 <u>신청·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「주택법」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.</u> <u><신 설></u>	법률 제2104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 제27조(통합심의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<u>방법</u> ----- ----- <u>「주택법」 제18조제5항</u>-----. <u>제50조의2(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의 구축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시·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

③ 제1항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,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